

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16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5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호적법 폐지(2008.1.1.)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적법상 개념이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법체계 및 개념상 혼란을 방지하고,
-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의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,
- 같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수상자 중복을 방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항의 현행화 및 수상시기 지정

“년” 을 “연” 으로, “시민의날” 을 “시민의 날” 로 한다.(안 제3조)

-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추가

“동장” 을 “시장·구청장·동장” 으로 한다.(안 제4조제1항)

- 호적법상 조항 삭제

“본적이 안산시인 자 또는 안산시의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” 을
“안산시의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” 으로 한다.(안 제5조제1항)

- 중복수상방지 조항 신설

②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.(안 제5조제2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

- 입법예고 : 2019. 4. 5. ~ 2019. 4. 26.

- 의견제출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- 방침결정문

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년” 을 “연” 으로, “시민의날” 을 “시민의 날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동장” 을 “시장·구청장·동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외의 부분) 중 “본적이 안산시인 자 또는 안산시의 직장” 를 “안산시의 직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이 정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문화종교팀장 안 옥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철승 (행정 2066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 시기) 최용신 봉사상은 <u>년</u>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<u>시민의날</u> 기념 행사일로 한다.	제3조(시장 시기) 최용신 봉사상은 <u>연</u> ----- <u>시민의 날</u> -----.
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)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<u>동장</u> 또는 여성단체장이 한다. ② (생 략)	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) ① ----- ----- <u>시장·구청장·동장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수상대상자)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<u>본적이</u> <u>안산시인</u> 자 또는 <u>안산시의 직장</u>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. <u><신 설></u>	제5조(수상대상자) ① ----- ----- <u>안산시의</u> <u>직장</u> ----- ----- -----. ② 같은 봉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.

[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]

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제3조제2항)

1. 비용발생요인

-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- 공적심사위원 인원 : 총15명 * 110,000원 * 1회 = 1,650,000원

4. 작성자 : 문화예술과장 이정숙

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제8-162
--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24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 다니는 자를 후보자로 하여 안산시와 관계된 자에게 수상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로 함 (안 제5조 제1항)

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

안산시 최용신 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수상대상자) ①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